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Ⅲ): 경영 활동

황동언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남북한은 상호 경제 교류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경험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는 등 남북 경협 활성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북한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고, 동시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경제 분야에서 개혁·개방의 기반이 다소 마련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11월 금강산 관광 사업이 성사되는 등 남북한 경제 협력은 점차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즉, 단순 교역에서 더 발전하여 위탁 가공 및 투자 협력 사업으로 경제 협력의 양적·질적 성장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때를 즈음하여 본지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불완전한 형태이긴 하지만, 상당수 제정되어 있는 북한의 외국 투자 관련 법안을 분석하고 사전에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애매모호한 법안 내용을 명확히 하여, 향후 경제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애물들을 미리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은 향후 남북한 경제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의 내용을 ① 기업의 설립 및 출자제도, ② 노무 관리, ③ 경영 활동, ④ 토지, ⑤ 금융(외환·보험), ⑥ 조세, ⑦ 분쟁처리 및 청산제도 등 크게 일곱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세번째인 경영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다.

기

업의 경영을 위해서는 경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즉, 경영을 위한 각종 조직과 활동 상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북한 내에서의 경영 활동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보장되는지 북한의 법 규정을 통해

분석해본다. 특히, 북한내 투자 기업의 경영 활동에 관련된 법규 가운데 대표적인 것, 즉 경영 조직, 자재 및 판매 관리 그리고 결산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경영 활동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한다.

경영 조직

경영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외국인투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합영법·합작법·외국인투자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합영 기업

합영법 제3장은 합영 기업의 기구와 경영 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합영 기업은 기본 규약·이사회 결정에 따라 관리 운영된다(합영법 제20조). 이사회는 합영 기업의 최고 결의 기관으로서 합영 기업의 기본 규약을 수정하거나, 경영 계획, 결산과 분배, 주요 인사의 임명 및 해임 등의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합영법 제16, 17조).

합영 기업에는 경영 관리 기구를 두는데, 이 기구에는 책임자·부책임자·재정부기원 및 관리 성원이 포함된다(합영법 시행 규정 제58조). 이외에도 경영 활동 상황을 일상적으로 검열하는 재정검열원을 두는데, 경영 규모가 작은 경우 재정검열원, 경영 규모가 큰 경우 재정검열원들로 구성되는 재정검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기업의 경영 대표권은 기업 책임자가 행사하며, 기업 책임자는 기본 규약·이사회 결정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고,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합영법 시행 규정 제59조). 일반적으로 책임자는 이사회 성원이 아닌 사람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는 없다.

〈표 1〉 이사회의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법정 대표인 이사장 1 명, 부이사장 1~2 명을 둠 부이사장 및 이사 수는 기본 규약에서 결정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거하여 임기는 4 년
정기 회의 및 임시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회의는 연 1 회 이상. 임시 회의는 필요시 소집 임시 회의는 이사·재정검열원·청산위원회 요구로 소집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규약 수정 보충, 기업 발전 대책, 경영 활동 계획, 결산과 분배 기업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검열원, 재정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 등록 자본 증가, 출자 몫 양도, 업종 변경, 존속 기간 연장 해산, 청산위원회조직 등을 토의 결정
의사 정족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이사의 2/3 이상 참가
의결 정족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규약 수정 보충, 출자 몫 양도, 업종 및 등록 자본 변동, 존속 기간 연장, 기업 해산 → 참석 이사 전원 찬성 기타 사항 → 참석 이사 과반수 찬성

자료: 합영법 시행 규정, 제49~54조.

합작 기업

자재 및 판매 관리

합자 당사자들은 비상설적인 공동 협의 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기구는 신기술 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 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합작법 제16조).

외국인 기업

외국인 기업은 100% 외국인 단독 투자 기업이므로, 독자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경영 활동은 승인받은 기본 규약 범위 내에서 가능 한데, 기본 규약에는 기구 및 직능, 이사장, 사장, 부기장, 재정검열원의 임무 등을 정하여 도행정경제위원회(지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외국인기업법 시행 규정 제13, 36조).

합영 기업

합영 기업은 경영 활동에 필요한 물자나 생산 제품을 북한 내에서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연간 물자 구입 및 제품 판매 계획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수공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합영법 제23조). 수송급 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계약 날짜, 계약 기간, 계약 대상, 수량과 질 및 기술적 요구, 가격 및 지불 조건, 넘겨주고 받기, 계약 이행 담보,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분쟁 해결과 같은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합영법 시행 규정 제75조).

합영 기업은 제품을 국가가 정해준 기관,

〈표 2〉 합작 기업의 운영 및 관리 기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규약 등에 규정 · 합작계약서, 기업창설신청서 등에 관리 기구 정원 및 종업원 수를, 기본규약에 공동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법, 관리 성원과 그 임무, 기업의 책임자, 종업원 수 등을 정하여 정무원 대외 경제 기관이나 지대 당국의 승인 획득 · 관리 성원은 겸직 금지
재정검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작 기업의 재정부기 문건을 검열, 검열 보고서 작성
공동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설 임의 기구로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당사자간 협의 결정(의장과 부의장은 합작 당사자 일방이 모두 맡을 수 없음) · 회의는 필요시 소집하며, 회의 소집 30 일 전 회의 날짜, 장소, 토의 안건을 성원에게 공고해야 함 · 새기술 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재투자, 투자 둑의 양도, 등록 자본의 증가, 업종 변경, 존속 기간의 연장, 기업의 발전 대책, 연간 경영 활동 계획과 같은 중요 문제 토의

자료: 합작법 시행규정 제19, 30~35조.

기업소에 조선원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얻은 조선원은 노력비, 대외 사업비, 세금, 사용료로 사용할 수 있다(합영법 시행 규정 제84조). 또한 물자나 제품을 수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수출입 물자에 대해서는 반출입 승인만을 받는다(합영법 제24조). 반출입신청서에는 물자의 이름과 수량, 가격과 금액, 통과 지점과 기간, 반출입 근거를 밝혀야 한다(합영법 시행 규정 제 83조).¹⁾ 합영 기업의 생산용 물자, 생산 제품, 기술의 수출입 가격은 해당 시기 국제 시장 가격에 준한다(합영법 시행 규정 제78조).

합작 기업

합작 기업은 합영 기업과 마찬가지로 물자나 제품을 공화국의 해당 기관·기업소에 판매·구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공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²⁾ 합영 기업과 다른 점은 북한의 기관·기업소가 합작 기업과 맞물린 노동력·물자·전기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이다(합작법 시행 규정 제65조).

합작 기업은 물자나 제품을 외국에 수출

입할 수 있다(합작법 제12조). 그리고 합작 기업의 생산용 물자, 생산 제품, 수입 상품, 기술의 수출입 가격과 국내 구입 가격은 국제 시장 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는 반면, 북한 내에 판매하는 생산 제품을 비롯한 모든 물자와 기술의 가격은 국가 가격 제정 기관이 정한 가격에 준한다(합작법 시행 규정 제68조).

외국인 기업

외국인 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 위원회에 생산 및 수출입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외국인기업법 제15조). 또한 외국인 기업은 물자나 제품을 북한이나 외국과 구매·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과 거래를 할 때에는 북한의 해당 무역 기관을 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외국인기업법 제17조). 만약 직접 구매·판매하려 하는 경우에는 대외 경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외국인기업법 시행 규정 제37조).

외국인 기업의 경우 생산과 경영 활동에 필요한 물자나 생산 제품을 수출입할 때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외국인기업법 제25조).

1) 반출입신청서를 받은 해당 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기술수출입신청서는 30 일) 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해주어야 한다.

2) 수공급 계약의 내용은 합영 기업과 동일하다(합작법 시행 규정 제64조).

물자나 제품의 구매·판매 가격의 경우 다른 외국인 투자 기업에 비해 약간 복잡하다. 수출입 상품 가격은 해당 시기 국제 시장 가격에 준한다. 지대 내에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지대 밖의 북한 지역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 및 지대 내에 판매하는 일부 대중 필수품의 가격은 국가 가격 제정 기관이 정한다(외국인기업법 시행 규정 제40조). 또 탈세를 목적으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을 국제 시장 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결산 및 분배

합영 기업

합영법 제4장에는 기업의 결산과 분배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합영 기업의 결산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연간 결산은 다음해 2월 내에 해야 한다(합영법 제33조). 그리고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결산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기업 창설 승인 기관과 재정 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합영법 제40조).

결산 이윤은 총수입에서 원가 및 기타 지출(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노력비, 감가상각금, 물자 구입 경비, 기업 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등)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합영법 제34조). 합영 기업은 결산 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이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이윤을 분배해야 한다. 이윤 분배는 출자 몫에 따라 합영 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합영법 제37조).³⁾

기업 기금으로는 크게 예비 기금과 기타 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예비 기금은 등록 자본의 25%에 해당한 금액이 될 때까지 매년 결산 이윤의 5%를 적립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합영 기업은 생산 확대 및 기술 발전 기금, 상금 기금, 문화 후생 기금, 양성 기금 등 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합영법 제36조).⁴⁾

합영 기업의 전년도 손실은 예비 기금으로 메울 수 있는데, 만약 전년도의 손실을 예비 기금으로 다 메울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기

〈표 3〉 결산 이윤과 이윤 분배

구분	내용
결산 이윤	· 총수입 - 원가 및 기타 지출
이윤 분배	· 결산 이윤 - 소득세 - 예비 기금 등의 기금

3) 그런데 합영법 시행 규정 제126조에서는 그외에도 출자 몫에 상관없이 합영 계약에 따라 이윤을 분배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4) 시행 규정 제118조에는 결산 이윤의 10%까지 이와 같은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금으로 매울 수 있으나, 연속하여 4년을 넘길 수는 없다(합영법 시행 규정 제124조).

이외에 합영 기업은 송금이나 재투자가 가능하다. 외국 투자가가 기업 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 수입, 기업 청산후 잔여 자금의 경우 송금이 가능하다.⁵⁾ 또 외국 투자가는 기업 이윤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합영법 제41조).⁶⁾

합작법

합작 기업의 결산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결산은 월별·분기별·연별로 하며, 재정부기결산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재정 은행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합작법 제17조).⁷⁾ 합작법에서는 외국 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 분배를 합작 제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도 가능

하다(합작법 제13조). 합작 기업의 제품과收入은 합작 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 의무를 이행하는 데 먼저 사용될 수 있다(합작법 제14조).⁸⁾ 투자 몫 상환 또는 이윤 분배를 제품으로 하는 경우, 그 가격은 국제 시장 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합작법 시행 규정 제103조).

기업 기금으로는 예비 기금,⁹⁾ 확대 재생산 및 기술 발전 기금, 상금 기금, 문화 후생 기금, 양성 기금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은 합영 기업과 동일하다. 단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은 합영 기업의 경우 기금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되는데, 합작 기업의 경우 확대 재생산 및 기술 발전 기금은 자체의 계획에 따라, 상금 기금·문화 후생 기금·양성 기금은 해당 재정 기관과 합의 하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합작법 시행 규정 제91조). 그리고 외국 투자가의 이윤·기타 소득은 송금이 가능하다. 이윤의 재투자도 가능하며, 그 구체적 내용도 합영 기업과 동일하다.

5) 이 경우 세금없이 송금이 가능하며, 송금신청서를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6)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를 반환받을 경우 세무 기관에 기업소득세반환신청서를 내야하며, 재투자한 자본을 투자한 날부터 5년 안에 철수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기업소득세액에 해당한 금액을 재지불해야 한다(합영법 시행 규정 제128조).

7) 경영 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합영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8) 합작법 시행 규정 제99조에서는 '수입'이 아니라 '이윤'을 합작 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 의무를 이행하는 데 먼저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 용어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9) 합영 기업과 마찬가지로 결손 충당이나 증자에만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법

외국인 기업의 기금은 다른 외국인 투자 기업과 종류가 동일하지만, 기금 적립에 차이점이 있다. 예비 기금은 다른 외국인 투자 기업과 마찬가지로 등록 자본의 25%가 될 때까지 매년 결산 이윤의 5%씩 적립하지만, 나머지 기금은 적립 한도를 외국인 기업이 자체로 정한다(외국인기업법 시행 규정 제47조). 외국인 기업은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할 수 있다. 이때 소득세를 반환받을 수 있는데, 반환액은 하부 구조 건설 대상의 경우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 전액, 기타 대상의 경우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50%이다(외국인기업법 제33조).¹⁰⁾

경영 활동 관련 법규의 문제점

법 규정의 차이나 해석 상의 문제점

먼저 경영 기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합영 기업 이사회의 경우 책임자와 부책임자의 선출 절차, 방법 등이 불명확하다. 즉,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지 아니면 이사장이 지명하는지, 그리고 만약 이

사회에서 선출한다면 전원 찬성이 필요한지 아니면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지 분명하지 않다. 합작 기업에서 설립될 수 있는 기구로 공동협의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에서 협의하는 중요한 문제 역시 불명확하다. 즉, 합작법 제16조에서는 새기술 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 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 문제를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 규정에서는 이외에 투자 몫의 양도, 등록 자본의 증가, 업종 변경, 존속 기간의 연장, 기업의 발전 대책, 연간 경영 활동 계획 등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동협의기구에서 협의할 사안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¹¹⁾

둘째, 물자 구입에 있어서는 합작 기업의 경우, 북한의 기관·기업소가 합작 기업의 노동력, 물자, 전기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타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이는 북한측이 경영한다는 합작 기업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합영·외국인 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보장받을 경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재투자시 소득세의 반환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 기업 종류별로 규

10) 외국인 기업도 재투자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 반환 소득세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11) 일반적으로 북한의 투자 관련 규정의 대부분이 이러한 범위의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표 4〉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활동 관련 내용 차이

구분	합영 기업	합작 기업	외국인 기업
물자 구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기관·기업소가 합작 기업의 노동력, 물자, 전기 등을 우선적 보장 	-
수출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화국의 무역 기관에 위탁하여 수출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를 적용하지 않음
이윤 분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작 제품으로 하는 것이 원칙 	-
기금 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 기금: 등록 자금의 25%까지 매년 이윤의 5%씩 적립 기타 기금: 결산 이윤의 10%까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영 기업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 기금: 합영 기업과 동일 기타 기금: 기업이 자체로 정함
이윤의 재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투자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영 기업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부 구조 건설 대상: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 전액 반환 기타 대상: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50% 반환

정 자체가 다르거나, 규정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합영·합작 기업의 경우 재투자 소득세의 반환은 일부 또는 전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 반환액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반면, 외국인 기업의 경우 재투자시 하부 구조 건설 대상에 대해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가운데 전액을 반환하고, 기타 대상에 대해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50%를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이한 종류의 투자 기업이라도 규정을 일률화하거나, 아니면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투자 규정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이 자본주의적 경영

원리에 익숙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회계·결산 같은 경우 북한의 회계·결산 용어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밖의 재무제표 등 국제적 회계 용어·개념과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 투자자에게 불리한 법 규정의 문제점

먼저 합작 기업의 경우 반드시 북한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경영도 북한측 당사자가 전담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윤 분배도 합작 제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경영권 및 이윤 분배에 있어서 별다

른 제약이 없는 중국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이윤 분배를 합작 제품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작 제품의 판로를 남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둘째, 외국 투자가의 경우 등록 자본의 증자는 가능하나 감자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합영·합작·외국인 기업 모두에 해당된다(합작법 시행 규정 제52조). 그런데 이러한 감자 금지 규정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 및 합리적 구조 조정을 저해할 수 있다.

셋째, 물자 구입이나 제품 판매시 가격 및 수량 결정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 당사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합작 기업이나

외국인 기업의 경우 생산 제품을 북한에 판매할 때 대체로 국가 가격 제정 기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그리고 합영 기업의 경우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그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활동은 위축될 수 있다. 또 가격 결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가격 결정도 협의로 결정한다든지 가격에 준한다는 용어로 되어 있어, 차후 실제 가격 결정에 상당한 혼란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내수·외수(수출) 판매 비율의 결정권 및 판매 대금의 외환으로의 자유교환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외국 투자가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수출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역시 명확히 규정되어 있

〈표 5〉 물자 및 제품 구매·판매시 가격 및 수량 결정

		합영 기업	합작 기업	외국인 기업
물자 구매	북한 물자 가격	명시 안됨	국제 시장 가격에 준하여 당사자 협의로 결정	명시 안됨
	외국 물자 가격	해당 시기 국제 시장 가격에 준함	국제 시장 가격에 준하여 당사자 협의로 결정	해당 시기 국제 시장 가격에 준함
제품 판매	북한내 판매 가격	명시 안됨	국가 가격 제정 기관이 정한 가격에 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대 내에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 · 지대밖 지역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과 지대내 판매하는 일부 대중 필수품의 가격은 국가 가격 제정 기관이 정함
	외국 판매 가격	해당 시기 국제 시장 가격에 준함	국제 시장 가격에 준하여 당사자 협의로 결정	해당 시기 국제 시장 가격에 준함

지 않다.

합영 기업은 인민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북한내 기관·기업소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대금은 북한원으로 받으며, 이 대금은 임금·대외 사업비·세금·사용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¹²⁾함으로써 그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경영 활동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舊 규정과 新 규정의 차이

먼저 현 합영법 시행 규정에서는 중요 문제를 결정할 때 이사회 회의 출석 이사의 전원 찬성, 그리고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중요 문제에 대해 출석 이사 전원 찬성, 기타 문제에 대해 출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 舊 합영법 시행 세칙(1992)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합영법의 의사 결정 방식 역시 대다수 국가들보다 엄격한 것이어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물자 및 제품의 구·판매의 경우, 舊 합영법 시행 세칙에서는 제51조에 북한

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구매할 수 없는 물자를 다른 나라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북한내 물자 우선 구매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 합영법 시행 규정에서는 “합영 기업은 경영 활동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을 공화국 영역 안에서 사쓰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기술·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 안에서 팔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물자 및 제품의 구·판매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¹³⁾ 따라서 舊 합영법에서 가지고 있던 북한의 납기 지연과 품질의 기준 미달 가능성, 저렴한 외국 물자 구입 금지로 인한 손실 등의 문제점은 현재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품 판매의 경우 법규상 북한 판매와 수출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업설립승인신청시 서류 상에 제품 수출 비율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에 북한내 생산 제품의 판로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舊 합영법 시행 세칙에서는 생산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제53조)되어 있었으나, 현

12) 합작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판매 대금을 원료 및 자재비·임금·대외 사업비·세금·사용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원료 및 자재비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역시 문제이다.

13) 북한 투자 법규와 관련되어 최근 국내 자료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설명이 없어, 독자들이 혼란스러울 우려도 있다.

행 규정에는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미국으로의 수출 여부이다. 현재 북한산 제품의 對미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적성국교역법(TWEA)에 의거하여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美 재무성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 허가가 있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미국이나 한국의 기업은 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은 정부 기관간 협의후 이루어진다.¹⁴⁾ 또한 해외자산통제국의 특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의 최혜국대우(MFN)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내 생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게 될 때 고관세를 물게 된다.¹⁵⁾

셋째, 舊 합영법 시행 세칙에서는 기금 조성시 해마다 얻은 소득 가운데 일정 비율을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소득의 개념이 납세전 순소득인지 납세후 순소득인지 불명확하였다. 그런데 현행 시행 규정은 결산 이윤의 일정 비율로 정의함으로써 그 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되었다.

맺음말

앞서 본 대로 북한의 투자 관련 법규는 아

직까지 불명확한 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지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의 요청에 따라 세계은행(IBRD)이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평양에서 북한 관료들을 대상으로 시장 경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북한의 시장 경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도 북한의 노력과 더불어 투자의 한 당사자인 우리 기업의 불명확하고 불공정한 규정에 대한 지적과 공동 해결 노력을 통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 특히 남북 경협 사업의 선도 기업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 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続

14) 1995년에 美 정부는 제재 완화 조치로서 북한 마그네사이트의 수입을 허가한 예가 있다.

15) 이는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